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분야의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하면서 그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이버대응전력팀과 안전정책팀을 폐지하면서 국방디지털혁신과 군수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소프트웨어융합팀과 군수지능화팀을 신설하는 한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및 청원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청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1. ~ 7.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을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데이터정책담당관”으로, “사이버정책담당관 및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을 “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장”으로,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 및 사이버정책담당관”을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데이터정책담당관 및 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으로,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을 “소프트웨어융합팀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기획담당관”을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9호 중 “국방정보화”를 각각 “국방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를 “국방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방정보화분야”를 “국방지능정보화분야”로 한다.

제4조의2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을 “데이터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형 데이터 전략·정책의 수립, 시행 및 제도 발전
2. 지능형 데이터 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3. 데이터 기술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추진
4. 데이터 관련 윤리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추진
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6. 지능형 데이터 활용사업의 소요기획 및 검토·조정
7. 지능형 데이터 인프라의 발전 및 전담기관 운영
8. 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및 관련 협의체 운영
9. 국방데이터 공유·제공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방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도 발전
11.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4조의2제17항제1호 중 “국방정보통신기반”을 “국방 정보통신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보통신기술(클라우드, 5세대 무선네트워크 등) 정책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3. 국방 주파수 관리 및 무선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4. 국방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정책의 수립·조정
 5. 국방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6. 국방 정보통신 시설, 화상회의, VoIP 등 정책의 발전 및 소요 검토
 7. 국방 사이버지식정보방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8. 정보통신기반의 소요기획,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9.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감독
 10. 국방 정보보호체계 관련 소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11. 국방사이버보안 평가 업무
 12. 국방정보체계 획득시 안전성, 신뢰성 기준의 수립 및 검증
- 제4조의2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이버정책담당관”을 “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전계획”을 “발전전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협의를”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사이버안보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협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다자간 협력 및 발전
11.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12.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13. 국방 전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14. 국방 전자기 분야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 협력
제4조의2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2. 디지털콘텐츠 발전에 관한 업무
3.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4. 상용 소프트웨어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5.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술의 발전에 관한 업무
6.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8.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9.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제5조제3항제15호 중 “고등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6조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방부 소관 청원의 접수·처리

제9조제2항 중 “대북정책관”을 각각 “방위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5호”를 “제5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3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방위정책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부

터 제8호까지,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 제31호 및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6항 중 “방위정책과”를 “북한정책과·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로, “북한정책과·군비통제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를 두되”를 “방위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두며”로, “방위정책과장·미국정책과장·북한정책과장·미사일우주정책과장·북핵대응정책과장”을 “북한정책과장·미국정책과장·방위정책과장·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으로, “교육훈련정책과장”을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으로, “국제평화협력과장·다자안보정책과장·군비통제정책과장”을 “국제평화협력과장 및 다자안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의 제공 및 추진상황의 점검

제9조제8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방기획지침의 작성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평가 및 군사적 대응전략에 대한 조정·통제
3.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관련 업무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5.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6.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7. 남북군사회담 대표·수행원 임무수행 및 회담대표단의 지원·관리
8.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유지·준수 관련 업무
9. 남북관리구역 및 군 통신선(전통문) 운용 관련 조정·통제
10.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대유엔사 협의
11. 대북현안관련 유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12.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13. 유엔사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대미·대유엔사 협의
14.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15. 비무장지대(DMZ)·공동경비구역(JSA)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16.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의 조정·통제
- ⑩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의 수립 및 추진
3. 남·북한 군비통제대책의 수립 및 추진
4.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관련지침의 수립
5. 주요국가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6. 군비통제 관련 감시·검증에 관한 사항
7.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통제·지도 및 감독
8. 군비통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9.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업무의 지도·감독
10.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 수립
11. 지뢰·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군축·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12. 대량살상무기체계와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13. 군축 및 군비통제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14. 화학·생물무기·우주·미사일의 군축·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15.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업무
16.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17. 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상봉·송환추진 관련 업무
18.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의 군령 보좌에 관한 총괄
2. 군사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방부 대응 총괄
3. 국방부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 기구의 운영
4.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발전
5. 전쟁지도·수행체계의 개선 발전
6. 전시 국방정책의 수립 및 분야별 전시 국방정책의 조정
7. 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8. 방위정책의 개발 및 발전, 유관부서와의 협조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핵·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국방분야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
2. 북핵·대량살상무기 동향 분석·평가
3. 북핵·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조
4. 북핵·대량살상무기 관련 회의체의 운영
5. 확장억제정책 발전 및 추진전략의 수립
6. 한·미 억제전략위원회·확장억제전략협의체 관련 기획 및 운영, 대미협의 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
7.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 기획·발전
8. 북핵 6자회담 및 비핵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
9. 핵군축·핵비확산 정책의 발전

10. 핵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체 업무 중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

⑳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사일 정책의 수립 및 발전
 2.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전략 발전 및 이행·감독
 3. 한·미 미사일협력 협의체의 운용 업무
 4. 다자간 미사일 비확산 관련 업무
 5. 미사일·우주분야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6. 미사일·우주분야 국제협력 관련 업무
 7. 국방우주 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8. 국방우주분야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9. 국방우주발전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10. 국방우주기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1. 국방우주분야 대미협력 및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운영
- 제10조제7항제10호 중 “국군인쇄창”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 3의3.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 제11조제6항 중 “재난관리과·안전정책팀”을 “재난안전관리과·군수지능화팀”으로,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안전정책팀장”을 “군수지능화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

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군의”를 “재난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기반체계보호”를 “국가 핵심기반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체기능인력”을 “기능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6.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추진
17.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18.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19.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종합 조정·평가
20.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발전
21.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의 총괄

제11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군수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군수정보화 관련 중·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기 및 검토
4.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관련 신규소요의 발굴 및 사업의 조정·통제
5. 군수정보체계의 관리, 운영·유지, 통합 및 표준화

6. 군수 내·외부 체계 간 통합·연동 및 표준화
7. 군수업무의 정보화기술 적용
8. 국가·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9. 군수 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의 보좌
10. 군수분야 민군협력 정보체계 관련 사업관리

제19조제8항제4호 중 “지능화·무인체계”를 “무인체계”로 한다.

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101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팀 및 군수지능화팀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및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데이터정책담당관이 보좌하고,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수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으로 하며, 기획관리관·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 -- <u>지능정보화정책관</u> ----- ----- <u>지능정보화정책관</u>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화기획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u>지능정보화정책관</u> ----- ----- ----- ----- ----- -----.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	⑥ ----- ----- ----- ----- ----- ----- ----- <u>지능정보</u>

획담당관·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사이버정책담당관 및 사이버대응전력팀장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 및 사이버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⑭ (생략)

⑮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생략)

화기획담당관·데이터정책담당관-----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장-----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데이터정책담당관 및 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

-----소프트웨어융합팀장-----

⑦ ~ ⑭ (현행과 같음)

⑮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1. (현행과 같음)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4. 국방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 8. (생략)

9. 국방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10. (생략)

11. 국방정보화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2. (생략)

⑯ 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검토 및 조정

3. 국방정보체계의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4.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2. 국방지능정보화 -----

3. 국방지능정보화-----

4. 국방지능정보화 -----

5. ~ 8. (현행과 같음)

9. 국방지능정보화 -----

10. (현행과 같음)

11. 국방지능정보화분야 -----

12. (현행과 같음)

⑯ 데이터정책담당관-----

1. 지능형 데이터 전략·정책의 수립, 시행 및 제도 발전

2. 지능형 데이터 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3. 데이터 기술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추진

4. 데이터 관련 윤리 기준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추진

5.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장을 보좌한다.	-----.
6. 국방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6. 지능형 데이터 활용사업의 소요기획 및 검토·조정	1. 국방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1. 국방 정보통신기반 ----- -----
7.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7. 지능형 데이터 인프라의 발 전 및 전담기관 운영	2.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중 기계획 검토·조정	2. 정보통신기술(클라우드, 5세 대 무선네트워크 등) 정책 발 전계획의 수립·조정
8.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8. 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및 관련 협의체 운영	3.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구 축에 관한 업무	3. 국방 주파수 관리 및 무선정 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국방데이터 공유·제공 활성 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정책 의 수립·조정·통제	4. 국방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정책의 수립·조정
1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 국방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도 발전	5.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감독	5. 국방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 용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신 설>	11.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6.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 관리	6. 국방 정보통신 시설, 화상회 의, VoIP 등 정책의 발전 및 소요 검토
<신 설>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신 설>	7. 국방 사이버지식정보방 발전 계획의 수립·조정
<신 설>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신 설>	8. 정보통신기반의 소요기획, 중 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 조정
⑰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	⑰ ----- -----	<신 설>	9.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감독
		<신 설>	10. 국방 정보보호체계 관련 소 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신 설>	11. 국방사이버보안 평가 업무

<신 설>	12. 국방정보체계 획득시 안전
	성, 신뢰성 기준의 수립 및 검
	증
⑮ 사이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 좌한다.	⑮ 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 ----- ---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	1. -----
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발전전략 ---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	2. -----
부처·기관 간 협의	----- 협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	<삭 제>
시설의 보호 관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	<삭 제>
한 정책수립 및 발전	
9. 국방 사이버안보의 국제협력	9. --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협
에 관한 사항	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
<신 설>	9의2.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
	· 다자간 협력 및 발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
	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신 설>	12.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신 설>	13. 국방 전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
	통제
⑯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4. 국방 전자기 분야 관련 정부 부처·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 협력
⑰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은 다음	⑰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보좌한다.
1. 국방 사이버위협 대응·위기	1.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의 수
관리 정책 수립	립·시행 및 제도 발전
2.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2. 디지털콘텐츠 발전에 관한
정부부처간 협의	업무
3. 국방 정보보호체계 소요종합,	3.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수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립·시행 및 제도 발전
4. 국방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4. 상용 소프트웨어 정책의 수
개발	립·시행 및 제도 발전
5. 사이버 분야 신기술의 군 적	5.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제
용 검토 및 기술분야 대외협	도 및 기술의 발전에 관한 업
력	무
6. 국방정보체계 획득시 안전성,	6.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신뢰성 기준 수립 및 검증	및 집행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체계 취약점 분석	7.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및 평가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8. 국방 사이버 방호수준 평가	8.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와 관리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과 · 동북아정책과 · 국제평화협력과 · 다자안보정책과 · 북한정책과 · 군비통제정책과 · 미사일우주정책과 · 북핵대응정책과를 두되, 정책기획과장 · 방위정책과장 · 미국정책과장 · 북한정책과장 · 미사일우주정책과장 · 북핵대응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기본정책과장 · 교육훈련정책과장 ·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 국제정책과장 · 동북아정책과장 · 국제평화협력과장 · 다자안보정책과장 · 군비통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8. 삭제

9. · 10. (생략)

<신설>

-----방위정책과 · 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두며-----
-----북한정책과장 · 미국정책과장 · 방위정책과장 · 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 교육훈련정책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 및 다자안보정책과장-----
-----.

⑦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9.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 제공 및 추진상황 점검

11. (생략)

⑧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⑨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 제공 및 추진상황 점검

2. 전시 국방정책 수립 및 분야별 전시 국방정책 조정

3. 전쟁지도 · 수행체계의 개선 발전

4. 삭제

5. 국방부 위기관리정책 수립 · 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6. 주요 안보현안과 관련된 대응정책 수립

7. 삭제

11. (현행과 같음)

⑧ -----
-----.

1. ~ 9. (현행과 같음)

10. 국방기획지침의 작성

⑨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대북 · 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 북한의 대내 · 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 · 평가 및 군사적 대응전략에 대한 조정 · 통제

3.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관련 업무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5.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 · 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6.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 · 통제

7. 남북군사회담 대표 · 수행원 임무수행 및 회담대표단의 지원 · 관리

<신 설>

8.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유지·준수 관련 업무
9. 남북관리구역 및 군 통신선
(전통문) 운용 관련 조정·통
제
10.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
·통제 및 대유엔사 협의
11. 대북현안관련 유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12.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
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일
무 수행에 관한 사항
13. 유엔사 관련 정책의 조정·
통제 및 대미·대유엔사 협의
14.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15. 비무장지대(DMZ)·공동경
비구역(JSA)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16.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의 조정·통제
- ⑩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조

- 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
안의 수립 및 추진
3. 남·북한 군비통제대책의 수
립 및 추진
4.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관련지침의 수립
5. 주요국가의 군비동향 및 군
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6. 군비통제 관련 감시·검증에
관한 사항
7.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
·통제·지도 및 감독
8. 군비통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9.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업무
의 지도·감독
10.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
수립
11. 지뢰·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군축·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이행
12. 대량살상무기체계와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⑩ ~ ⑯ (생략) ⑱ 군비통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부처·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	13. 군축 및 군비통제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14. 화학·생물무기·우주·미사일 등의 군축·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15.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대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업무 16.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17. 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상봉·송환추진 관련 업무 18.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 정착 지원 ⑪ ~ ⑰ (현행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의 군령 보좌에 관한 총괄 2. 군사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방부 대응 총괄		안 수립 및 추진 3. 남·북한 군비통제대책 수립 및 추진 4.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관련지침의 수립 5. 주요국가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6. 군비통제 관련 감시·검증에 관한 사항 7.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통제·지도 및 감독 8. 군비통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9.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업무의 지도·감독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 수립 14. 지뢰·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군축·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15. 대량살상무기체계와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3. 국방부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 기구의 운영 4.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발전 5. 전쟁지도·수행체계의 개선 발전 6. 전시 국방정책의 수립 및 분야별 전시 국방정책의 조정 7. 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8. 방위정책의 개발 및 발전, 유관부서와의 협조
---	---	--	---	---

<u>관련 업무</u> 16. <u>군축 및 군비통제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u> 17. <u>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협의체 운영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u> 18. <u>화학·생물무기 군축·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u> 19. <u>확산방지구상(PSI)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업무</u> 20. <u>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u> 21. <u>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상봉·송환추진 관련 업무</u> 22. <u>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 정착 지원</u> ①9 <u>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삭제</u> 2. <u>우주, 미사일 분야 군축·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u>	①9 <u>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북핵·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국방분야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u> 2. <u>북핵·대량살상무기 동향 분석·평가</u>	3. <u>삭제</u> 4. <u>삭제</u> 5. <u>삭제</u> 6. <u>삭제</u> 7. <u>국방분야 우주·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u> 8. <u>국방우주발전위원회 및 한·미 우주협력 회의체(SCWG) 운영</u> 9. <u>미사일지침 개정 업무의 총괄·조정</u> ②0 <u>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북핵 대응 관련 국방분야 정책 수립 및 발전</u> 2. <u>확장억제정책 발전 및 추진 전략 수립</u>	<u>석·평가</u> 3. <u>북핵·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조</u> 4. <u>북핵·대량살상무기 관련 회의체의 운영</u> 5. <u>확장억제정책 발전 및 추진 전략의 수립</u> 6. <u>한·미 억제전략위원회·확장억제전략협의체 관련 기획 및 운영, 대미협의 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u> 7. <u>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 기획·발전</u> 8. <u>북핵 6자회담 및 비핵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u> 9. <u>핵군축·핵비확산 정책의 발전</u> 10. <u>핵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체 업무 중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u> ②0 <u>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미사일 정책의 수립 및 발전</u> 2. <u>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전략 발전 및 이행·감독</u> 3. <u>한·미 미사일협력 협의체의</u>
--	---	---	---

3. 한미 확장억제협약의체 운영기획, 대미협의 방향 수립,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 관리 및 감독	운용 업무
4. 북핵 위기관리 정책 발전	4. 다자간 미사일 비확산 관련 업무
5. 북핵 동향 분석·평가	5. 미사일·우주분야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6. 북핵 관련 유관부처·기관과의 협조	6. 미사일·우주분야 국제협력 관련 업무
7. 북핵 6자회담 및 비핵화 관련 정부정책의 지원	7. 국방우주 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8. 핵군축·핵비확산 정책 발전	8. 국방우주분야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9. 핵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체 업무 중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	9. 국방우주발전위원회 및 안보 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10. 국방부 북핵 관련 회의체 운영	10. 국방우주기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1. 국방우주분야 대미협력 및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운영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⑫ (생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⑫ (현행과 같음)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국군인쇄창</u> 업무의 지도·감독	10. <u>국방출판지원단</u> -----
⑬ 삭제	----

⑭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설>	3의3. <u>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 관리</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⑮ (생략)	⑮ (현행과 같음)
⑯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 관리</u>	<삭제>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⑰ ~ ⑱ (생략)	⑰ ~ ⑱ (현행과 같음)
⑲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군 <u>전염병</u> 예방, 식품·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통제	8. -- <u>감염병</u> -----
9. ~ 14. (생략)	9. ~ 14. (현행과 같음)
⑳ ~ ㉑ (생략)	㉑ ~ ㉒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 ~ ⑤ (생략)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 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	⑥ -----

과 · 탄약수송관리과 · 재난관리	-----재난안전
과 · 안전정책팀 · 시설기획과 ·	관리과 · 군수지능화팀-----
시설제도기술과 · 건설관리과 ·	-----
부대건설사업과 · 국유재산환경	-----
과 · 군주거정책과 · 군소음보상	-----
팀 · 전력정책과 · 기반전력계획	-----
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	-----
를 두며, 군수기획과장 · 물자관	-----
리과장 · 재난관리과장 · 시설기	----재난안전관리과장-----
획과장 · 시설제도기술과장 · 건	-----
설관리과장 · 부대건설사업과장	-----
· 국유재산환경과장 · 군주거정	-----
책과장 · 전력정책과장 · 기반전	-----
력계획평가과장 및 공통전력계	-----
획평가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장비	-----
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	-----
은 영관급장교로, 안전정책팀장	-----군수지능화팀장
및 군소음보상팀장은 서기관 ·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	-----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
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	-----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	-----
로 보한다.	-----.
⑦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⑦ -----

분장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	<삭 제>
략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19. 군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삭 제>
및 제도 발전	
20. 군수정보화 중 · 장기 소요,	<삭 제>
중기계획, 예산소요 제기 및	
검토	
21.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신규	<삭 제>
소요 발굴 및 체계구축 사업	
종합 및 조정 · 통제	
22. 군수정보체계의 관리, 운영	<삭 제>
· 유지, 통합 및 표준화	
23. 군수 내 · 외부 체계 간 통합	<삭 제>
· 연동 및 표준화	
24. 군수업무의 정보화 기술 적	<삭 제>
용	
25. 국가 · 민간 정보화 자원의	<삭 제>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26. 군수 분야 국방정보화책임	<삭 제>
관(CIO)보좌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6. (생략)
7. 국가기본체계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군 대체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9. ~ 11. (생략)
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통제

13. ~ 1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⑪ 재난안전관리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5. 재난 관련 -----

6. (현행과 같음)
7. 국가핵심기반 보호 -----

8. -- 기능인력 -----

9. ~ 11. (현행과 같음)
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13. ~ 14. (현행과 같음)
15. 군 안전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16.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추진
17.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18.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19.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종합 조정·평가
20.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발전

<신설>

⑫ 안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2.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추진
3.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4.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조정
5.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 종합 조정·평가
6.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 개발·발전
7.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 총괄

21.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의 총괄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군수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군수정보화 관련 중·장기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기 및 검토
4.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관련 신규소요의 발굴 및 사업의 조정·통제
5. 군수정보체계의 관리, 운영·유지, 통합 및 표준화
6. 군수 내·외부 체계 간 통합·연동 및 표준화
7. 군수업무의 정보화기술 적용
8. 국가·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9. 군수 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의 보좌
10. 군수분야 민군협력 정보체계 관련 사업관리

⑬ ~ ⑳ (생략) 제19조(국방개혁실) ① ~ ⑦ (생략) ⑧ 국방혁신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 3. (생략) 4. 국방 <u>지능화·무인체계</u> 발전에 필요한 혁신분야 총괄·조정 5. (생략) ⑨ (생략) 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제29조 및 제4조의2제6항·제1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된 사이버대응전력팀은 2024년 5월 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이 기획조	⑬ ~ ⑳ (현행과 같음) 제19조(국방개혁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무인체계</u> ----- ----- - 5.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삭 제>
--	---

<u>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사이버정책담당관이 보좌한다.</u> 국방부령 제101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안전정책팀은 2023년 4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안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재난관리과장이 분장한다.	국방부령 제101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삭 제> <삭 제>
--	---